|  |  |  |
| --- | --- | --- |
| **국가세무총국의 2016년도 기업연구개발비용 세전가산공제 정책에 따른 기업소득세납세신고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2017년제12호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연구개발비용 세전가산공제정책 유관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5년제97호,이하“97호 공고”)규정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2016년도 기업연구개발비용 세전가산공제에 따른 기업소득세 연도납세신고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기업이 연구개발비용 세전가산공제정책을 향유하는 경우, 연도납세신도 시 97호공고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항목의 가산공제가 가능한 연구개발비용 상황집계표> (이하<상황집계표>)를 첨부해 보고하여야 한다.  2. 기업이 연구개발비용 세전가산공제 정책을 향유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연도납세신고서(A류, 2014년판>)의 <연구개발비용 가산공제 우대혜택명세표>(A107014)에 기입하여 보고 시 제10항 제19열 “당해 연구개발비용가산공제액 합계” 란에만 기입하고,데이터 출처는 <상황집계표> 순번11의 “11.당기 실제가산공제총액” 항에 기입한 “발생액”이다.  3. 본 공고는 2016년도 기업소득세연말정산에 적용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7년 5월 2일 |  | **国家税务总局关于2016年度企业研究开发费用税前加计扣除政策企业所得税纳税申报问题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7年第12号  　　为有效落实《国家税务总局关于企业研究开发费用税前加计扣除政策有关问题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5年第97号，以下简称“97号公告”）规定，现就2016年度企业研究开发费用税前加计扣除企业所得税年度纳税申报问题公告如下：  　　一、企业享受研究开发费用税前加计扣除政策的，在年度纳税申报时，应当按照97号公告第六条第(一)项规定，附报《研发项目可加计扣除研究开发费用情况归集表》（以下简称《情况归集表》）。  　　二、企业享受研究开发费用税前加计扣除政策的，在填报《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年度纳税申报表（A类，2014年版）》之《研发费用加计扣除优惠明细表》（A107014）时，仅填写第10行第19列“本年研发费用加计扣除额合计”，数据来源为《情况归集表》序号11“十一、当期实际加计扣除总额”行次填写的“发生额”。  　　三、本公告适用于2016年度企业所得税汇算清缴。  　　特此公告。  国家税务总局  2017年5月2日 |